

# 양주시의회 공고 제 2021 - 19호

「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운영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29일

양주시의회 의장  


##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- 양주시는 2021년 7월 기준 85개소의 약국이 개설 등록되어 있으나, 연중 무휴로 휴일에 개소하는 약국은 단 7개소에 그치고 심야시간대에 운영 되는 약국은 없음.
- 이에 취약시간대(심야 및 휴일) 공공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,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·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- 나. 공공약국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의 지원 규정(안 제3~4조)
- 다. 공공약국의 관리 및 사업비의 환수 등을 규정(안 제5조)
- 라. 시장의 공공약국 홍보 의무 규정(안 제6조)
- 마. 취약시간 지정,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(안 제7조)

### 3. 자치법규안: 별첨

#### 4. 의견제출

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1년 8월 5일 (목)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양주시 홈페이지 등
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전화번호, 의견 등

라. 제출기관: 양주시의회(의회사무과)

주 소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(남방동)

전 화: 031-8082-7063

##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### □ 자치법규명: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운영 지원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생년월일:
- 주 소:
- 연 락 처: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고